
제7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발표자료

2023. 10. 4.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자 : 정대(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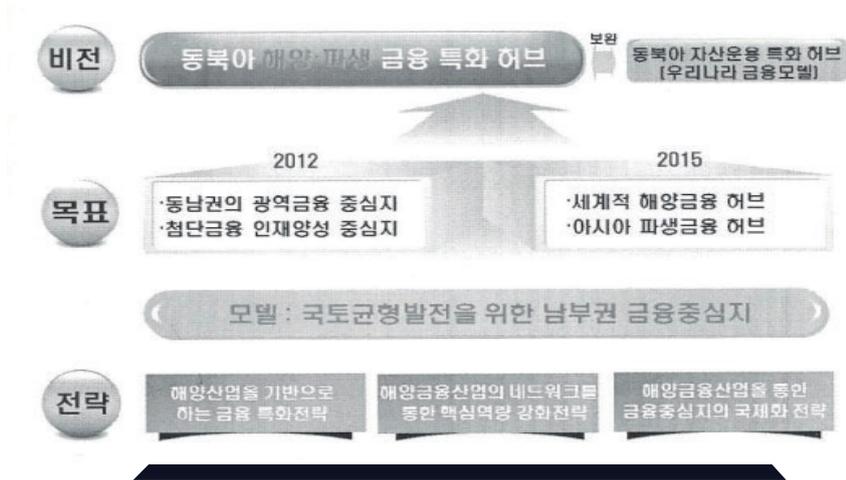
목차

- I 서론
- II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 III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및 검사제도 도입
-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 V 결론

I. 서론

1.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과와 한계

[2008년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상의 금융중심지 부산의 비전]



I. 서론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정부주도형 해양금융 발전-



+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산 설립

I. 서론

[2018년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2018년 9월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이 개원함

[2020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2018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연구용역결과, 민관협력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2020년 7월 1일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출범함

I. 서론

[2020년 국제적 금융회사 유치]

- 2020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D-Space BIFC)에 홍콩 등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회사 3개사를 유치하였음

	금융회사	국가
1	BMI GROUP Limited	홍콩
2	(주)한국시티은행	미국
3	(주)요즈마그룹 코리아	이스라엘

I. 서론

[2022년 부산광역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 2022년 9월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순위에서 29위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그 순위가 37위로 하락하였음



I. 서론

2. 문제 인식과 법제도적 한계

- (1) 해양금융의 정부 주도적 성격 강화 현상
- (2)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증권·선물회사의 서울 집중
- (3)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위상 약화
- (4) 부산광역시의 법적 권한 취약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현황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권한과 역할

1) 설치근거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 회의와 2005년 6월 금융허브회의 등을 통해 금융허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로 개칭하여 법정기구화되었음
-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별도의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로 설치하였음(동법 제6조)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2) 권한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심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의결권한이 아닌 심의권한만을 부여한 것임
 - 그러나 단순심의에 그치지 않고, 심의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11조)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3) 구성

□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되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회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됨(동법 제6조제2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2020년 기준으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 기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원(2020년)]

구분	구성원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10명)	교수, 은행장 등 10명
당연직 위원 (4명 : 행정기관)	1. 기획재정부 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서울시장 4. 부산시장
당연직 위원 (6명 : 금융 유관기관)	1. 한국투자공사 사장 2. 한국거래소 이사장 3.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5. 생명보험협회 회장 6. 손해보험협회 회장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현황

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사항

1) 심의대상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8개의 법정사항과 1개의 임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보고하는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2) 기본계획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3년 3월 기준으로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음

[기본계획 포함사항]

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한계 및 문제점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지위적 한계

1) 위상의 격하

- 현행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법 시행시점에 금융정책업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경제부총리급 위원회에서 장관급위원회로 하락하였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축소

- 2022년 기준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은 5개로 감소하였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변화]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법 시행시	현행
1. 경제부총리(위원장) 2. 법무부 장관 3. 보건복지부 장관 4. 산업자원부 장관 5. 건설교통부 장관 6. 노동부 장관 7. 기획예산처 장관 8. 금감위원장 9. 교육부 차관 10. 서울시 행정부시장 11. 기타 위원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 3.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4. 지식경제부 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6. 국토해양부 차관 7.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8.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4.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서울시 및 부산시)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3) 권한상 한계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음
- 즉,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은 금융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으로 안건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은 아님

4) 지정 금융중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상 한계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방조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중심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는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의 재정지원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3.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방안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 격상

-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관급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국무총리급 또는 경제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면서 정부측 당연위원의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 또한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I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 강화

나.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의 권한 확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금융중심지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III.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및 검사 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의 경우 서울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서울에 본부 및 관련 업무조직을 집중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대부분 금융중개기능이 서울에 집중화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 거점과 크게 상관관계 없는 금융회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략적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를 타겟으로 하여 금융규제 진입 강도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중심지에서 관할하는 것을 모색해볼 수 있음



Ⅲ.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및 검사 제도 도입

-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일정 지역거점형 소규모 금융회사 진입규제를 관할하는 경우
 - ① 행정기관의 사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정기관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 ② 행정규제와 감독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 ③ 부산금융지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과 지도 역량을 발휘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점이 있음
- 현재 높은 금융업 진입장벽으로 인해 특화 금융회사가 한국에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새로운 아이디어로 금융업에 진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려운 환경임
- 2018년 5월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Ⅲ.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및 검사 제도 도입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의 금융업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특화 소규모 금융회사가 다수 설립될 가능성이 크고, 2019년 자산운용시장(전문사모, 일임, 자문) 진입요건의 완화로 인해 이에 따른 행정사무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부산거점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의 경우 특구법 내지 특별법에 근거해 부산금융중심지에 업무위탁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등록절차만 단순히 위탁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등록과 검사권까지 보유하는지는 금융중심지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지위 여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Ⅲ.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및 검사 제도 도입

2.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검사의 금융중심지 위탁방안

-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환경 정비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규제자와 혁신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융자문업, 핀테크기업과 같이 소규모 금융회사의 등록·검사와 같은 업무를 금융중심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진입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점, 더구나 스몰라이센스가 활발하게 인정될 경우 설립건수는 많은데 비해 검사·감독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검사·감독의 효율·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하는 점에서 규제 진입 시에도 위탁을 통해 효율·효과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Ⅲ.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및 검사 제도 도입

- 소규모 금융회사 : 투자자문업·일임업의 등록제 운영
 -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는데, 투자자문업 등록시 1억원 또는 2억 5천만원의 최저자본이 필요함
 - 투자일임업의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시 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시 15억원의 최저자본이 필요함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입법 현황

-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거래 중심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음

나.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한계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심지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 현행 금융중심지법은 1차 조성 기반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외의 금융중심지 사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제도적 활용 방안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안 처리 현황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 결과

- 금융특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과 금융중심지 중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할 경우 우려되는 지자체간 갈등 상황 및 금융중심지와 금융특구와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금융중심지 중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함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 금융특구청 설치, 금융특구청장 임명·임기 및 임용권의 위임, 지방공무원 파견 및 금융특구청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금융특구 도입 여부와 함께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본점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한 영업 축소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금융특구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제시함

IV. 금융특구제도의 도입

다. 시사점

- 금융특구청의 설치 필요성
-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특구에 대한 일정한 지원 제도로 패키지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 부산금융중심지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개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의 제고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지자체의 권한 확대
 -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 규제의 개선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의 제고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지자체의 권한 확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금융중심지법의 개정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범위 확대
 -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V. 결론

- 제00조(권한 이양의 신청)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양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권한이양의 범위 등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이양을 승인받은 시·도는 이양받을 사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양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이양계획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확정된다.

V. 결론

□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검사제도 도입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과 같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등록·검사 업무를 부산금융중심지에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
-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 “부산금융특구청”을 설치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의 등록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디지털 금융창업 육성을 중심으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방안

디지털 금융창업 육성을 중심으로

구자영 박사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본 강의자료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목차

- I. 발표자 소개
 -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경제
 - III. 디지털금융 동향
 - IV. 부산 디지털금융생태계의 한계
 - V. 서울시 디지털금융생태계 조성사례
 - VI. 부산의 대응전략
- 에필로그

I. 발표자 소개

구자영 과장

학력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 박사
KAIST 디지털미디어 공학석사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 학사

저서 테크노사피엔스, 2020, 중앙M&B
기술경영, 2022, 박영사

분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정책

수상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우수연구상
제3회 웰컴 미래모바일아이디어공모전 1위
제1회삼성전자 미래가전창작제 2위

경력사항

공직 경력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통계과장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팀장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민간 경력

-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래학부 교수
- 한화시스템 빅데이터TFT
- LIG시스템 신사업전략기획팀
- NOAATS 컨설팅사업부
- Fnstars 금융컨설턴트



3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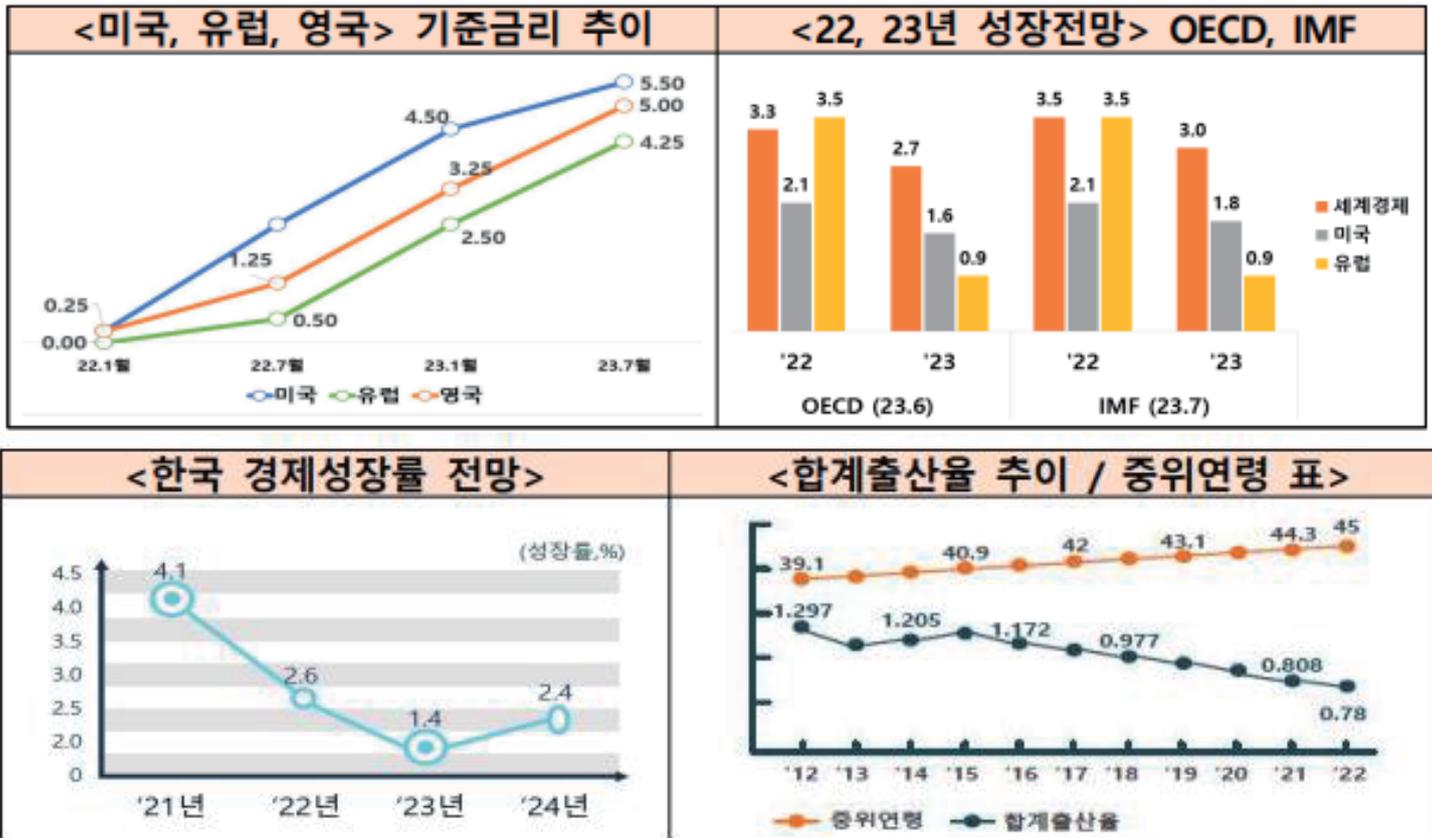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조지프 쉘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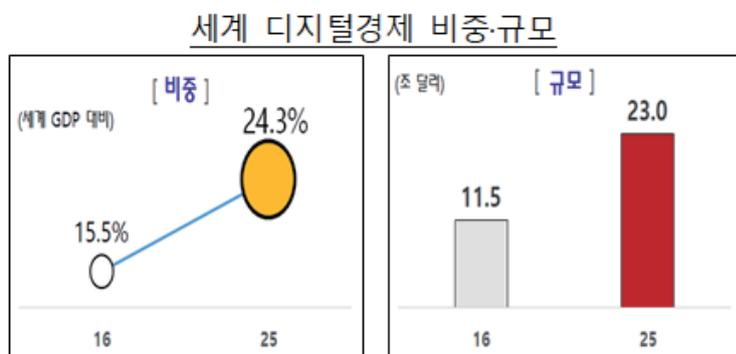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 Digital Economy



* 출처 : Oxford Economics('17.9)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	Apple	6	Tesla
2	MS	7	Berkshire
3	Aramco	8	NVIDIA
4	Alphabet	9	Meta(Face)
5	Amazon	10	TSMC

* 출처 : 미국 등 증권거래소('22.4)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기업 10개 중 5개가 美 디지털 기반 디지털 경제 대전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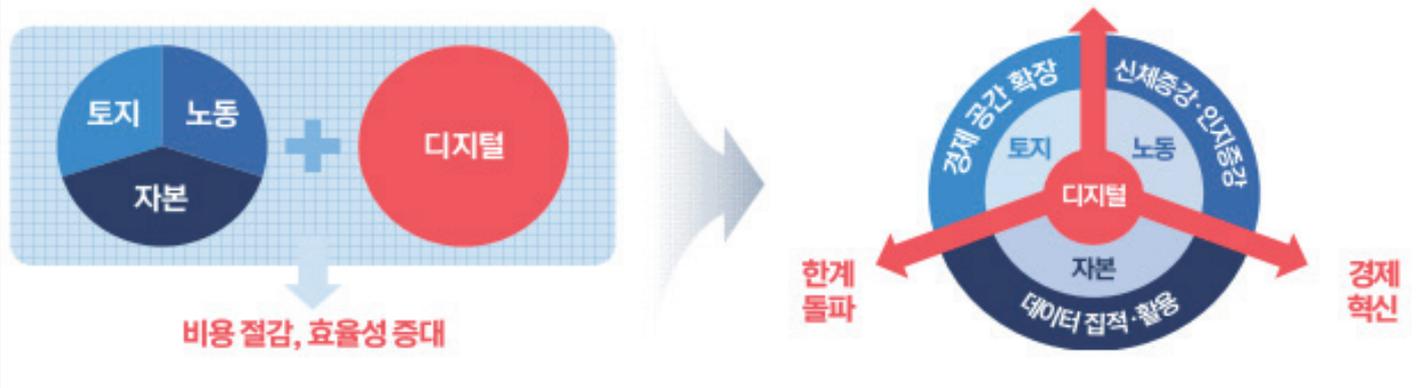
과거 100위권밖의 그래픽부품 전통제조기업·NVIDIA는 언택트 메타플랫폼 생태계의 폭증변화에 맞추어 3D·AI 가상화 디지털 대전환으로 단번에 세계 8위권내 진입에 성공사례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 Digital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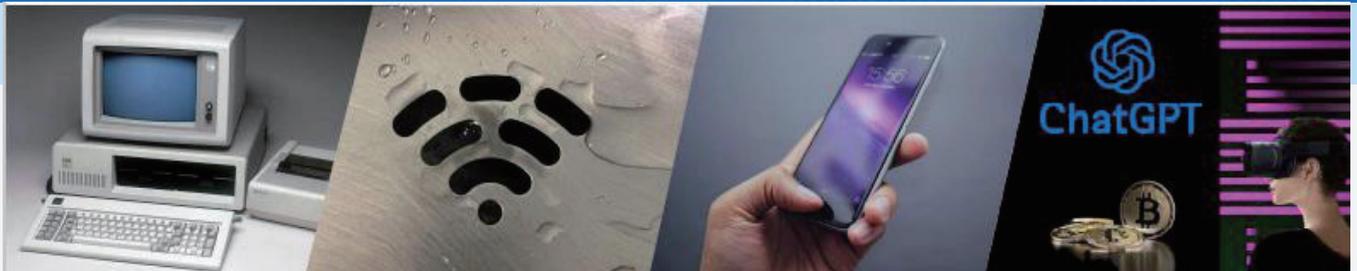
경제 생산요소 혁신 → 경제체질 탈바꿈

디지털은 쏠산업의 자동화·효율화 수단을 넘어, 경제 생산요소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며 경제체질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



과기부,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22.9)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1981

Personal Computer



1995

Internet / WWW



2009

Smart Phone / Social



2023

Blockchain? / Metaverse? /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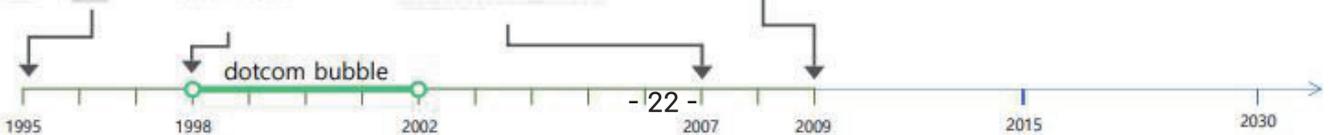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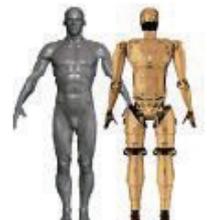
Web & Cloud Economy

Shared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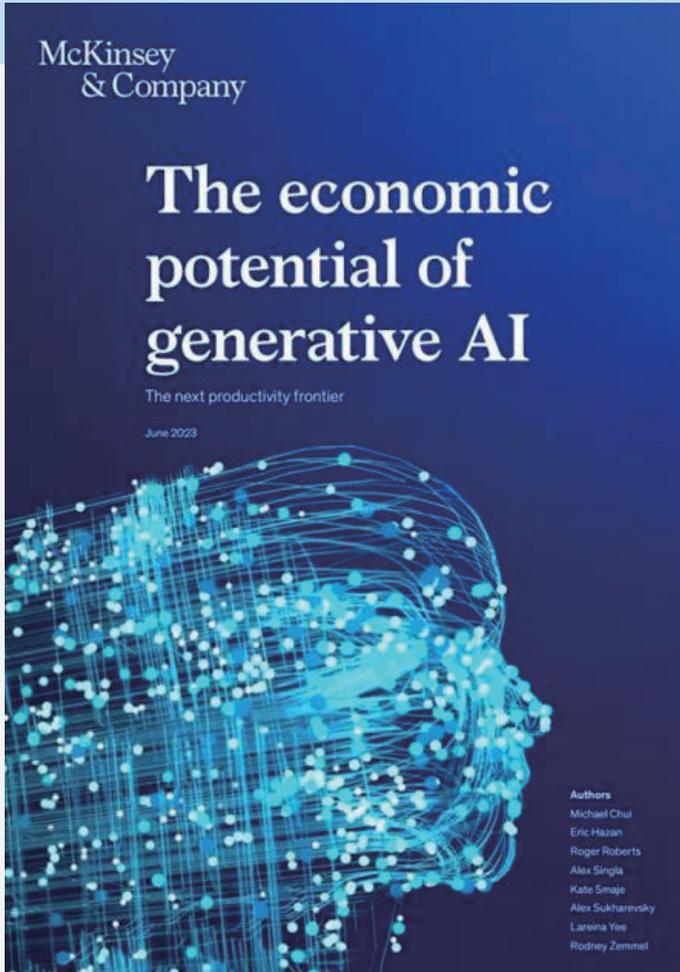
App Economy

Platform Economy

AI Economy?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경제적 부가가치
=>4조4천억\$

영국GDP=3조\$

9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 Digital economy 8가지 Hyper 특징

- 초 지능화 ▶ AI의 인간노동 전영역으로의 확장
- 초 연결화 ▶ 인간-인간, 사물-사물, 인간-사물간 상호작용의 초연결성
- 초 융합화 ▶ 기술-기술, 기계-기계, 산업간, 물리공간-가상공간
- 초 개인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상품
- 초 자동화 ▶ 머신이 모든 공정에서 인간을 배제
- 초 정밀화 ▶ 기업활동의 다양한 오류, 위험을 제거
- 초 격차 ▶ 디지털 격차, 알고리즘 격차
- 초 신뢰성 ▶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안정성, 완결성의 보장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특징

- (초연결과 융복합) AI, IoT,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5G 네트워크,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엣지컴퓨팅 등 초연결사회를 위한 기반기술과 브릿징 기술이 활발히 연구·개발·실증 중



11

II. 기술과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

» 디지털 독점화

□ 데이터 독점 (수확체증 법칙)

- ▶ 디지털경제의 핵심경쟁력은 플랫폼 참여자와의 상호작용과정의 데이터
- ▶ 네트워크 효과 + DNA loop (데이터 축적 선순환)

□ 알고리즘 독점 (추천시스템)

- ▶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 소비자와 공급자간 미스매칭 제거
- ▶ 틈새시장 사라짐 → 신규진입자 차단 (진입장벽)

□ 국내금융권도 데이터 우위가 있는 빅테크의 진입이 거세짐

→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 부각

→ 규제당국의 긴밀한 협력 or 신규주체생성

Ⅲ. 디지털 금융 동향

구분	지금	여신	수신	자산관리	은행인가보유
NAVER	●	◎	▲	◎	
kakao	●	◎	◎	◎	✓
Google	◎	▲	▲		
amazon	●	●			
facebook	▲				
Apple	●	◎	▲		
Alibaba Group 阿里巴巴集团	●	●	●	●	✓
Tencent 腾讯	●	●	●	●	✓

● High penetration ◎ Medium penetration ▲ Low penetration
 ※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 (자본시장연구원 '22.9월) 자료 재구성

Ⅲ. 디지털 금융 동향

» 금융산업의 트렌드

□ 금융의 빅블러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짐)

- ▶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경쟁 → 협력 필요성 증대

□ 금융의 플랫폼화

- ▶ 거대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 ▶ 전통금융사들도 고객접점을 잃지 않기 위해 플랫폼으로 진화

□ 금융의 Open Innovation

- ▶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가능한 민첩한(Agile) 기술조직 소싱
- ▶ 금융/비금융의 cross over 적인 협력과 핀테크의 적용

Ⅲ. 디지털 금융 동향

» 금융산업의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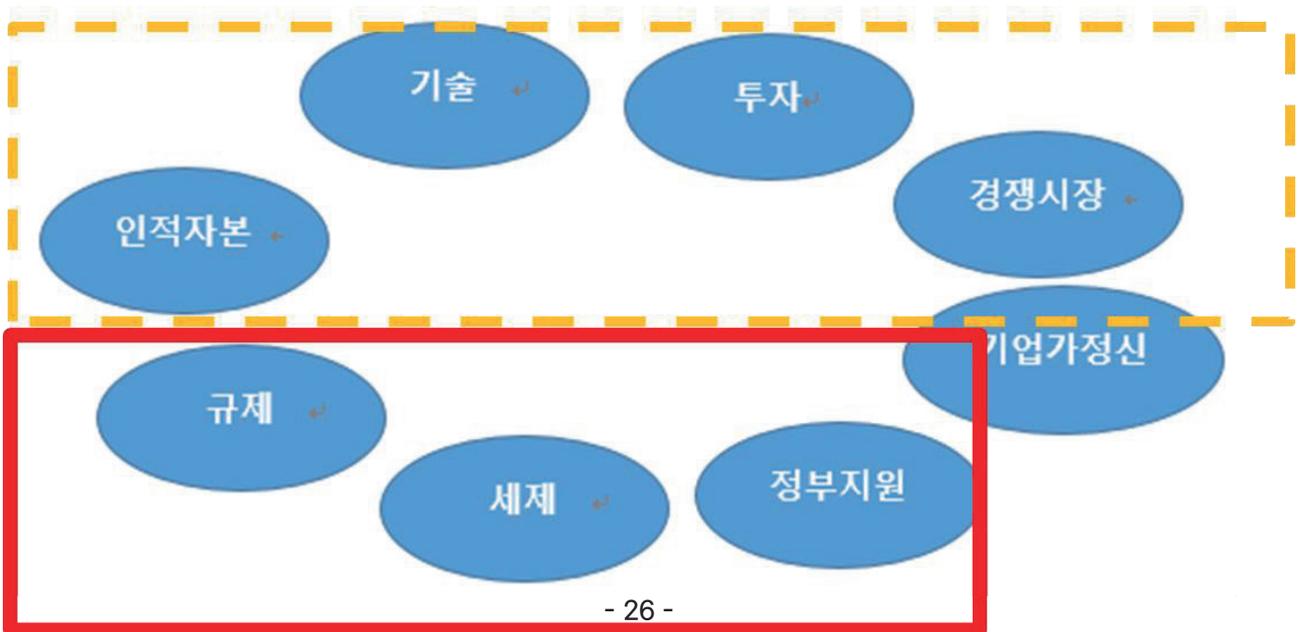
현재 Banking/Payment 모델의 5대 유형	미래 비즈니스 모델 유형
<p>1. 종합 서비스 은행 (Full Service Ban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고객군에 대해 폭넓은 금융 서비스 제공 방카슈랑스, 자산 운용 상품 및 서비스 제공 <p>2. 전문 은행 (Specialist Ban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매금융(리테일) 고객군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이자 수익이 주 수입이며, 디지털전문은행이 포함됨 <p>3. 신용제공자 (Consumer Credit Provid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사각지대 고객을 위한 신용 공여 서비스 제공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시작, 단기 소액 대출 등 제공 <p>4. 송금 서비스 Money Transfer Provid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포용성 확대 위한 송금, 입출금 서비스 제공 소매상점, 우체국 등 접근 용이한 네트워크 보유 <p>5. 디지털 지갑 (Digital Wallet Provid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플랫폼 등과 연동하여 고객 트랙픽 확보 후, 예금 및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확장 	<p>1. 유니버설 은행 (Universal Ban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 기반 오퍼링 극대화 오프라인 지점 서비스 차별화 및 효율 향상 필수 <p>2. 거래중심 은행 (Transaction-focused Ban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겟 고객 세분화 통한 거래 비용 최소화가 핵심 (거래비용 < 거래 수수료 매출) 거래 볼륨이 높은 고객 대상 서비스로 오픈뱅킹을 통해 다양한 비금융 빅테크 기업 진입 가능 <p>3. Ambient 은행 (Ambient Ban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기기(IoT) 속에 Embedded 되어 금융 거래를 촉진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여 숨은 금융니즈 파악 API, 마이크로서비스, 모듈러 등 금융 서비스 Enabler 역할 수행

Source: Future of Retail Banking (KPMG Global), KPMG Analysis

Ⅳ. 부산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한계

» 혁신생태계

□ James F. Moore 교수가 1993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처음으로 Business ecosystem이라는 개념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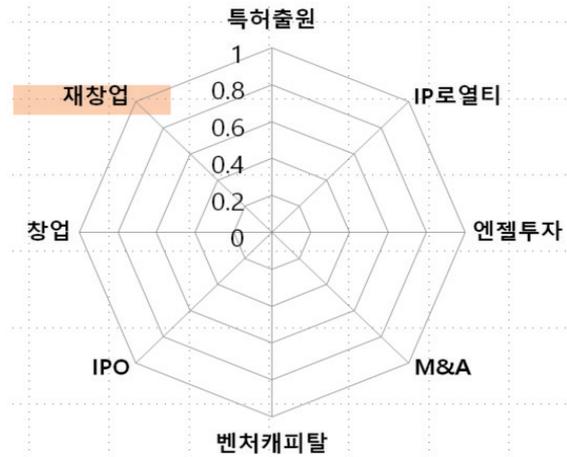


IV. 부산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한계

» 혁신의 안전망

혁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방사형 형태로 만든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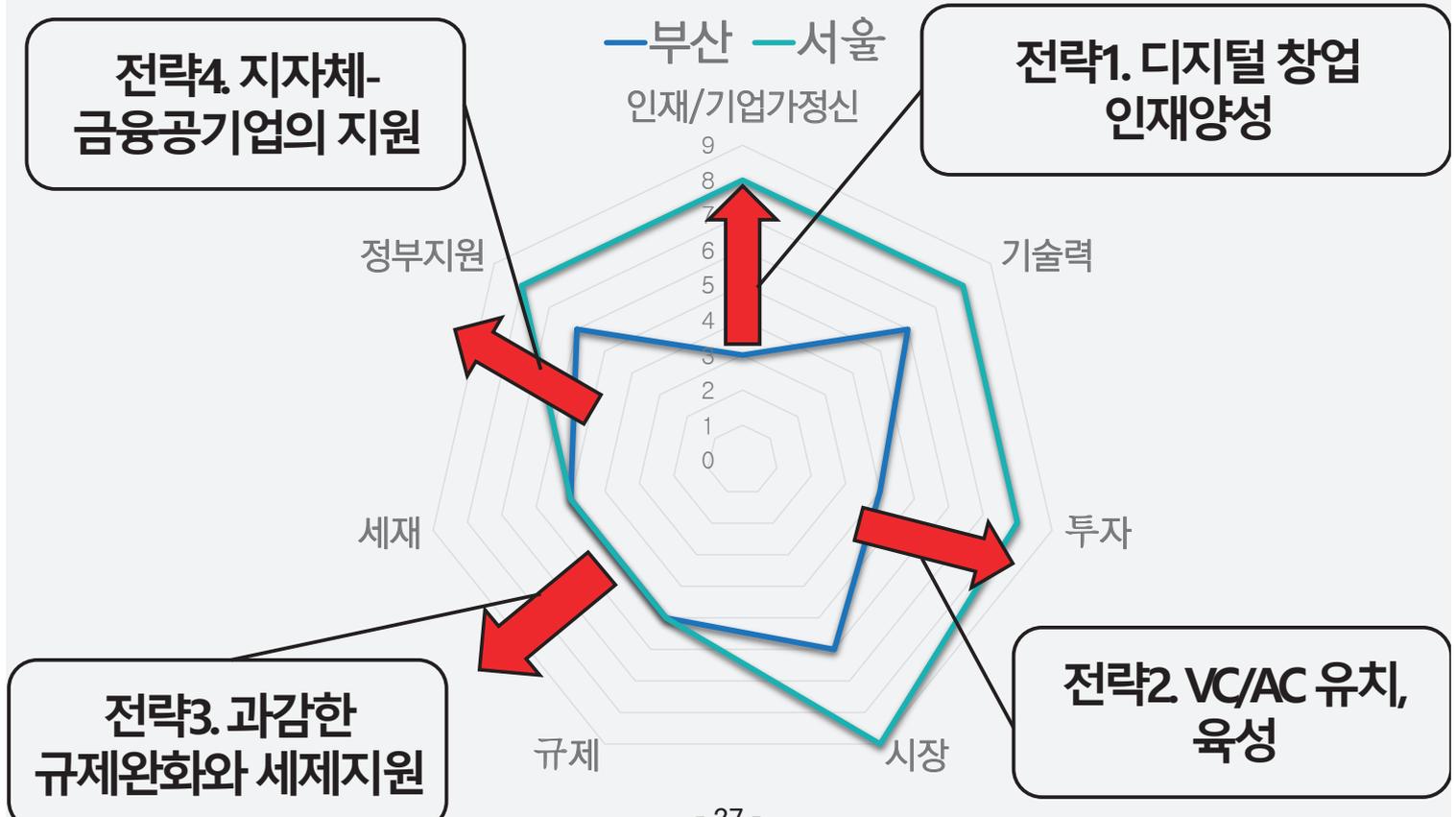
→ 기업 생태계에서 자유로운 도전(창업), 연구개발, 성장, 투자, 사업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제반 기업환경: 자본시장의 성숙도, 규제환경, 세제환경, 기업가정신, 기술성숙도 등이 주요 요소 (key factors)



IV. 부산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한계

디지털 금융 혁신의 안전망

—부산 —서울
인재/기업가정신



V. 서울시 디지털금융생태계 조성 사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생태계 육성

서울핀테크랩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핀테크시범사업

핀테크 비즈니스
레퍼런스 구축

핀테크 해외 IR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울핀테크아카데미

핀테크 전문가
양성

〈 서울 핀테크 생태계 육성 체계 개요 〉

19

VI. 부산의 대응전략

개방형 혁신 생태계

뉴욕市
혁신창업가의 산실



미국대학원 - Cornell Tech
코넬 테크 - 코넬 대학교

- 28 -

20